

16. 割賦金融業 營業認可

財政經濟院公告 第1996-2號 1996. 1. 19

신용카드업법 제17조의2에 의하여 할부금융업을 인가하고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.

회 사 명	대 표 자	소 재
연합할부금융주식회사	이병균	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-31
금호주택할부금융주식회사	이삼섭	서울 종로구 서린동 70
대구주택할부금융주식회사	최상희	대구 중구 동인동3가 361-1
대한주택할부금융주식회사	김정식	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-5
동부주택할부금융주식회사	박명노	서울 강남구 을지로3가 259-1
동아주택할부금융주식회사	신현일	서울 중구 다동 33
신대한주택할부금융주식회사	이정호	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-32
신안주택할부금융주식회사	김상훈	서울 강남구 청담동 49-5
주식회사영남주택할부금융	박창호	대구 동구 신천동 286-1
주식회사우성주택할부금융	손옥기	서울 서초구 1586-7
한국주택할부금융주식회사	정홍기	광주 남구 서동 112